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8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 인재근・소병훈・송갑석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강선우 • 이해식 • 양원영

문진석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 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등).
-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함(안 제4조제2항).
-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보급 및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인력개발원"이라"를 ""인재원"이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부설기관 및"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 립
-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관리
-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국제 협력사업
-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9.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지원 사업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제7조제1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원장 1명"을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원장, 상임이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전

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인력개발원이"를 "인재원이"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의 명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임직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임원의 임기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기산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보건복</u>	제1조(목적) <u>한국보건</u>
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	복지인재원
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	
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	
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	
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u>한국보건복지인력</u>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
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u>원"인재원"이라</u>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u>.</u>
제3조(설립) ① <u>인력개발원</u> 은 그	제3조(설립) ① <u>인재원</u>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u>인력개</u>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u>인재원</u>
<u>발원</u> 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	
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	② 인재원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 제5조(정관) ① 인재원-----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10. (생 략)
 -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 계획의 수립 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 발•보급 및 관리
 -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 육훈련 강사의 양성
 -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 육훈련 강사의 양성

	- <u>부</u>	·설7	기관	<u> </u>	Ξ.	보건]복/	지	교
육	• টু	트런	등	을	연-	구 •	개빝	날하	.フ]
위	한	연-	구소:	를	설	치히	-고,	지	역
<u>増</u>	亚	육	활성	화	를	위형	하여	특	— 별
시	• 고	강역	시 •	도	및	특	· 별ス	<u>ー</u>	도

- 1. ~ 10. (현행과 같음)
- ② 인재원----

제6조(사업) ① <u>인력개발원</u>은 다 제6조(사업) ① <u>인재원</u>-----

-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 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
 -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 로그램・콘텐츠 개발・보급 및 관리
-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

성 및 간행물 발간

-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량개발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과 관련한 위탁 수탁 및 부 대사업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 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 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제7조(임원) ① 인재원-----

-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 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 업
-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 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 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 ·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 성 및 간행물 발간
 - 9.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 량개발사업
 -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 알권리 지원 사업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 업과 관련한 위탁 수탁 및 부대사업

(2)	<u>인재원</u>	 =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

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디				

- ② (생략)
- ③ <u>원장</u> 외의 임원은 비상근 (非常勤)으로 한다.
- ④ (생략)
-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인력개발원</u>에 이사회를 둔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u>인력개발원</u>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 ⑤ (생 략)
- 제9조(직원의 임면) <u>인력개발원</u>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0조(운영재원) <u>인력개발원</u>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u>인력개</u> <u>발원</u>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 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한다.
 - ② (생략)

제12조(자금의 차입) <u>인력개발원</u>

<u>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 상임이사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회) ①
인재원
1. ~ 5. (현행과 같음)
6인재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직원의 임면) <u>인재원</u>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
· 제11조(출연금) ①인재원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의 차입) <u>인재원</u>

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 ----인 재원-----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 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재원-----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② 인재원-----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의	세	입.	세	출	결	산서	를	작	성
	하	여	「주	식	회시	}	등의	외	부	감
	사	에	관힌	<u> </u>	법률		제	2조기	제7	호
	및	제	9조	케	따른	<u>=</u>	감시	인	또	는
	공	인호	계계시	나의	ठे	계	감시	를	받	6
	다	<u> </u>	연도	2	월	말	까지	보	.건	복
	지-	부정)관 •	베게	제	출	하여	야	한1	다.
저	16	조(역	업무	의	지5	٤.	감독	독 등	=)	1
	보?	건볼	부지브	부장	관음	<u>)</u>	<u>인</u>	력가	발	원
	을	지.	도 •	감독	두한	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인력개발</u> 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 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 ③ (생 략)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인재원
<u>.</u>
② <u>인재원</u>
③ (현행과 같음)
4
인재원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재원

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 · 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 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 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 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 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 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②
인 <u>재원</u>
제18조(비밀 유지) <u>인재원</u>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인재원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조(「민법」의 준용) <u>인재원</u>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

② (현행과 같음)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
한국보건복지인재	를 위반하여 <u>한국보건복지인력</u>
원	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② (생 략)

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